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13. 12. 12. 시행)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를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 (생략)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u>행정안전부장관과</u>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 6. (생략)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u>행정안전부장관</u>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안 <u>전 행정부장관과</u> ----- -----. 4. ~ 6. (현행과 같음) 7. ----- --<u>안전 행정부장관</u> ----- -----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
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
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
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
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
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으로 한다.

-----안전 행정부장관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
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
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
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
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
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1]